

최저임금제도

어떻게 바뀌었나요?



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

- ✓ 최저임금은 **국가가 정한 임금의 하한선**입니다.
- ✓ 저임금노동자에게 **최소한의 생계를 보장**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**7,530원**

월 환산액 **1,573,770원**

(주 40시간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)



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.



나의 월급은 **최저임금법** 위반일까요?

내가 받는 **임금의 항목**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157만원

최저임금액

300만원

나의 월급



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범위가 좁습니다.

- ✓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때 포함되는 임금항목에는
기본급, 직책·직무수당 등만 들어갑니다.

정기상여금, 복리후생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



그래서, 실제 받은 임금은 300만 원인데
법 위반에 해당됩니다.

현재 기준으로는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결과가 생깁니다.

✓ 정기상여금은 대부분 기본급에 연동됩니다.

그래서, 최저임금 인상 시
정기상여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이
더 많이 인상됩니다.



최저임금제도,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닙니다.

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.



✓ 개정 최저임금법은 실제 받고 있는 정기상여금,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좁아 법 위반이 되었던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였습니다.
- 실제 임금체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.